

2026년도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 사업계획 공고(수시)

국내 분산에너지 분야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의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분산에너지 분야 우리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며, 글로벌 시장 분산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획득 지원
- ☐ 지원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분야 유·무형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인증 취득 예정인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인증 및 유사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이거나 기 지원된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
** 유사사업에 기 지원되었더라도 하기의 지원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유사사업 既 인증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지원가능여부
A제품 A인증 완료	유형1	A제품 A인증 지원	지원 불가
	유형2	A제품 B인증 지원	지원 가능
	유형3	B제품 A인증 지원	

※ 세부 지원제외 대상은 하단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항목 참조

- ☐ 지원금액 : 총 756백만원

< 분산에너지 관련 인증 예시 >

국가	인증명	상세내용	인증기관
미국	UL1741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등의 분산에너지 자원이 전력망에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준	UL
독일	VDE AR-N-4105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에서 저압(400V 이하) 전력망에 분산형 전원(DER)을 연계하기 위한 기술 지침 및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	VDE FNN
영국	G99	분산형 전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이 전력계통에 연결될 때 따라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정한 표준	TUV SUD
유럽	EN 50549	분산형 전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을 저압(LV) 또는 중압(MV)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한 유럽 표준	TUV 라인란드
일본	JET PV-PCS01	JET는 일본 내 저압 계통(AC 10kW 이하)에 연계되는 인버터, PCS, ESS 등의 분산전원 장비를 대상 시험 및 인증	JET

3 세부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지원기간	신청자격
유·무형 해외인증 획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90%이내^{주1)} - 기업당 최대 2건, 건당 1억원 이내 ○ 총 지원규모 : 756백만원 	연내 협약 완료 사업 기준 '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미취득 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관련 ^{주2)} 중소중견기업

주1)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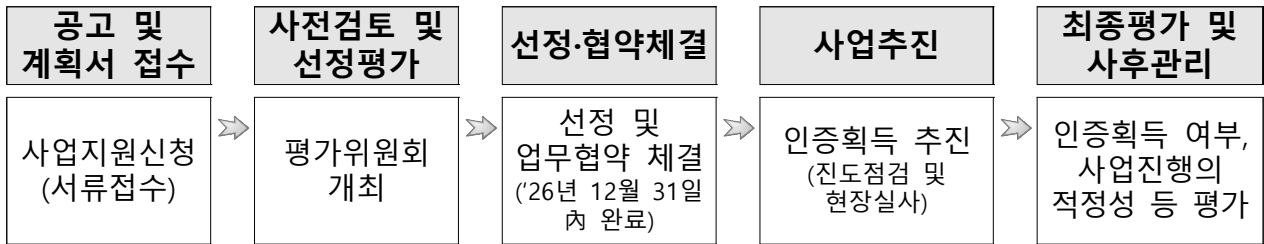
주2)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외한 아래 해당 분야의 설비(제품, 부품 등) 및 플랫폼 등

※ 세부 지원가능 분야 및 설비·제품·부품 예시는 하단의 '세부 지원가능 분야' 참조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민간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90%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70% 이내	총사업비의 30% 이상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그 하위법령 포함)에 따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1호(그 하위법령 포함)에 따른 중견기업을 뜻함

□ 추진 절차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필요시 예비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및 사업비 조정안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세부 제출서류는 붙임 '운용규정' 내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② 선정평가 : 사전(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바탕으로 평가위원 서류 평가 실시(필요시 발표 진행)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대상 사업선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은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대상 사업 중 예산범위 內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동점 시 평가기준 내 가점 → 기업현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순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

** 공고 전 인증 취득 완료(‘26년 내) 기업은 평가항목 중 '조직 구성의 적정성', '인증계획의 구체성', '장애요인의 해결방안' 만점 부여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선금신청 :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선금 지급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선금신청 전까지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함

⑥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 협약기간 내 인증 취득 불가 시 최종평가 결과(불성실 수행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구 분	항 목	배점
1. 기업현황 (30점)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기업의 재무 건전성	10
	기술력 및 제품 경쟁력	15
2. 추진계획 (35점)	인증계획의 구체성	15
	장애요인의 해결방안	15
	인증비용 구성의 적정성	5
3. 기대효과 (35점)	예상 매출(수출) 증대효과	15
	국내 분산에너지 산업 기여도	20
총 계(100점)		
가점 (5점)	지원 신청 품목 관련 해외인증 접수증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접수증 혹은 접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기타 접수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5

* 사업 신청 시 접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가점 부여

5 세부 지원가능 분야 ·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세부 지원가능 분야

※ 사업계획서를 통해 신청 설비·제품·부품에 대한 인증 지원으로 분산 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지원가능 분야	설비·제품·부품 예시
분산에너지	ESS 배터리셀·모듈·팩·랙, PCS, BMS, EMS, 전용접속부품, 안전장치
	분산형 발전·열병합 분산형엔진·터빈발전기, CHP, 열회수장치, 발전기제어·보호장치
	연료전지 분산발전 연료전지발전시스템, MEA·분리판, 연료공급·처리, 전력변환·제어장치
	집단에너지·지역열 지역열공급·회수장치, 열교환기, 축열·축냉, 제어밸브, 열량계
	VPP 분산자원집합제어기, 원격출력제어기, VPP 제어시스템, 통신장치
	마이크로그리드 중앙제어기, EMS, 독립운전전환장치, 블랙스타트·동기화·보호장치
	DR·에너지관리 자동수요반응·부하제어·피크저감, 분산에너지연계BEMS-FEMS
	V2G·스마트충전 양방향충전·충방전장치, 제어모듈, 스마트충전·집합제어장치
	운영·통신 전기·열통합관리, 감시·계측, 원격제어, 통신게이트웨이, 전용보안장치
	핵심 부품·소재 전력반도체모듈, 센서, 제어보드, 전자부품, 통신모듈, 안전·열관리부품
전력망·계통	계통연계 전력변환 분산전원연계장치, 스마트·계통형성인버터, 양방향컨버터
	전압·전력품질 STATCOM, SVG, SVC, 고조파필터, 전압·무효전력제어장치
	계통보호·개폐 보호계전기, 재폐로기, 자동개폐기, 계통연계보호장치
	계측·감시·통신 스마트미터, PMU, RTU-FRTU, 전력품질계측·통신장치
	전력망제어·운영 DERMS-ADMS 연계제어기, 배전망자동화·출력제어장치
	계통연계전력기자재 분산전원연계용변압기·배전반·차단기·접속재·케이블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허위 제출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단, 상기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가능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가능
-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의 대표, 사업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 전담기관은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전담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은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관계법령 및 안내사항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참여기업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참여자.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에 해당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등 사업 관련 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선금신청 전까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민간부담금을 확인한 후 선금을 지급함. 잔금의 경우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함
-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5년간 운영성과 보고의 의무가 있음
- 본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지원금액 환수 예정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작성해야 하며, 기업 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작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운용규정」에 따름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공모기간 : '26.11.30.(월) 까지 수시 접수
 -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접수 사업은 매월 말일 취합하여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선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연내 협약 완료) 상기 기간까지만 수시 접수 진행

☐ 신청방법 :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der@energy.or.kr) 제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첨부

☐ 운용규정 포함 기타 참고사항 등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국민소통-공단소식-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공고시 첨부된 양식 및 양식 내 첨부서류 참조
2	사업계획서	공고시 첨부된 양식 참조

☐ 문의처

사업	연락처
분산에너지 국제인증 지원사업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	052-920-0934
	052-920-0932